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노인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노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민주당 노인조직의 확대, 민주세력의 집권과 평화통일,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제반 활동과 노인 복지향상과 권익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위원회는 중앙당에 두고, 시·도당에 시·도당 노인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중앙에 전국노인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지역에 16개 시·도당 노인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노인위원회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 | |
|-------------------|----------------------|
| 1. 노인의 정치참여 확대 | 2. 노인조직의 확대 |
| 3. 각종 선거관리 업무 | 4. 노인정책 개발 및 홍보 |
| 5. 노인 정치 발전기금의 운용 | 6. 국내외 노인단체와의 교류, 협력 |
| 7. 기타 목적에 부합된 사항 | |

제2장 전국노인위원회 운영위원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위원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집행하는 최고의 결기관이다.

②전국노인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50인 이하로, (후략)

제7조(임원)

①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② ③ ④ ⑤

제9조(권한)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4.

제10조(회의소집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전국노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국노인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노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문, 노인조직의 확대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시한을 한정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전국노인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노인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시·도당 노인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시당 노인위원회는 노인당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당 노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당 노인위원장이 된다.

② 시당 노인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노인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역위원회 노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당 노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시·도 위원장은 지역에 읍·면·동 협의회장을 신설하고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
| 1. 시당 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 | 2. 해당지역의 만65세 이상의 국회의원 |
| 3. 해당지역의 만65세 이상의 광역의원 | 4. 해당지역의 만65세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
| 5. 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 | 6. 시당 노인위원회 상무위원 |
| 7. 시당 노인위원장이 추천하여 시당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 | |
|-------------------------------|-----------------|
| 1. 시당 노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3. 사업계획 확정 |
| 2. 지역위원회 노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 사항의 결정 |

제15조(임원)

① 시당 노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수 있다.

② 시당 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당 위원장이 시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등)

① 시당 노인위원회에 지역 노인조직 확대 및 노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전국노인위원회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3장 재정

제17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중앙당 지원과 회비, 특별기금, 후원금으로 한다.

제18조(사용목적) 위원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 | | |
|---------------------------|-----------------------------|
| 1. 전국노인위원회 기본사업 및 조직확대 사업 | 2. 지역 노인 자치활동을 위한 사업 |
| 3. 노인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 4. 온·오프라인 홍보 |
| 5. 해외교류 및 노인관련 대외사업 | 6. 노인조직 확대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 |

제19조(내규의 변경)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운영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일자: 2009년 9월 24일)
2. 본 내규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울산시당노인위원회 규칙